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3.09.06 (수)

3. 변경 사유 :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채권평가회사 사명변경 (NICE채권평가 → NICE피앤아이)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동종유형 총보수	2022.07.29 기준	2023.07.31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2022.08.17 기준	2023.08.17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2.08.18 기준	2023.08.17 기준
투자자 유의사항	<p>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주요투자위험	<p>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p>	<p>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p>

	자회사가 ~(중간생략)~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u>후 2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중간생략)~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u>기준가격 산정일 전날</u>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 9. <생략>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 9. <현행과 동일>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u>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u>)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 동종유형 총보수	2022.07.29 기준	<u>2023.07.31 기준</u>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2022.08.17 기준	<u>2023.08.17 기준</u>
운용전문인력	2022.08.18 기준	<u>2023.08.17 기준</u>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 년(<u>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u>)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중간생략)~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중간생략)~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 추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2022.08.18 기준	2023.08.17 기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2022.08.18 기준	2023.08.17 기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의 종류 / 투자한도 / 투자대상의 조건)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생략)~ 15일 이내로 함 가. ~ 마. <생략> 주1) ~ 주2)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생략)~ 15일 이내로 함 가. ~ 마. <현행과 동일> 주1) ~ 주2) <현행과 동일>

		<p>주3) <u>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u></p> <p>가. <u>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ETF 해당)</u></p> <p>나. <u>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해당)</u></p> <p>다. <u>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u></p> <p>주4) <u>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 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다. 기타 투자위험</p>	<p>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중간생략)~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u>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u>)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u>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중간생략)~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p>	-	<p><u>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 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1.41%으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 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u>17.57%</u>으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 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p>
<p>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p>	<p>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u>해외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u>)</p>
<p>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p>	<p>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p>	<p>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u>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2022.08.17 기준	<u>2023.08.17 기준</u>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p>	2022.07.29 기준	<u>2023.07.31 기준</u>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제 16 기(2022.08.17) 기준	<u>제 17 기(2023.08.17) 기준</u>
<p>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p>	-	<u><신설 1></u>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p>	주 1) ~ 주 5) <생략>	<p>주 1) ~ 주 5) <현행과 동일> 주 6) <u>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Ae : 최근 3 년차 수익률은 8.68 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20201126 ~ 20210817]</u></p>

		<p>주 7)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Pe1 : 최근 3 년차 수익률은 8.35 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20201206 ~ 20210817]</p> <p>주 8)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Pe2 : 최근 3 년차 수익률은 8.68 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20201126 ~ 20210817]</p> <p>주 9)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S(P)1 : 최근 3 년차 수익률은 11.70 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20200826 ~ 20210817]</p> <p>주 10)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S(P)2 : 최근 3 년차 수익률은 11.77 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20200824 ~ 20210817]</p> <p>주 11)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P1 : 최근 3 년차 수익률은 8.22 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20201210 ~ 20210817]</p> <p>주 12)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1 : 최근 1 년차 수익률은 6 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p> <p>주 13)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4 : 최근 2 년차 수익률은 6 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p>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21.12.31 기준	2022.12.31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8.18 기준	2023.08.17 기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NICE 채권평가	NICE 피앤아이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임의해지

니다.

☞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p>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p>① <생략></p> <p>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③ ~ ⑦ <생략></p> <p>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⑩ <생략></p>	<p>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p> <p>③ ~ ⑦ <현행과 동일></p> <p>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 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⑩ <현행과 동일></p>

<신설 1>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24.24)%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7기 0백만원, 16기 0백만원, 15기 0백만원 발생)

주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7기 0백만원, 16기 0백만원, 15기 0백만원 발생)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83,977.57	84.44	0.10	122,683.24	123.50	0.1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00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83,977.57	84.44	0.10	122,683.24	123.50	0.10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자본시장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 참고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격(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958,416	40,540.93	907,738	43,436.64	35,190.51	123.43	0.00

주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

(분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공모집합투자기구(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매입방법/환매방법: 제X영업일 - 대차대조표	- <u>매입방법/환매방법: X영업일</u> - <u>재무상태표</u>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 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④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 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u>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 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u>기준가격 산정일</u>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32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

	<p>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p>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u>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회계감사 적용 면제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p>①~② <생략></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u>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u></p>
제40조(판매수수료)	<p>①~② <생략></p> <p>③ 판매회사는 ~(중간생략)~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판매회사는 ~(중간생략)~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u>수익증권저축약관</u>"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p>①~④ <생략></p> <p>⑤ <신설></p>	<p>①~④ <현행과 동일></p> <p>⑤ <u>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u></p>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p>① 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동일></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u>시행령</u>)</p>

	<p>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지체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지체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동일></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p>
제51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p>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연금지축 종류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